

二艘引 中型機船底引網漁業의 原價實態에 關한 研究

朴 正 鎬*

A Study on the Cost State of Medium Size Two-boat Trawler Fishery

Jeung-Ho Park

目 次

| | |
|------------------------|------------------------|
| I. 序 言 | 原價要素의 分析 |
| II. 調査研究의 概要 | V. 二艘引 中型機船底引網漁業의 漁撈事業 |
| III. 二艘引 中型機船底引網漁業의 概況 | 原價計算 |
| IV. 二艘引 中型機船底引網漁業의 | VI. 結 言 |

I. 序 言

오늘날 企業의 規模가 漸次로 擴大됨에 따라, 資本蓄積의 增大 技術革新의 前進 購買力의 上昇 등은 生産規模의 擴大 大量生産 大量消費를 招來하여, 近代의 生産企業은 오히려 激甚한 競爭 가운데 營爲되고 있다. 그러므로 生産企業間의 競爭이 激化할수록 生産企業이 同種企業과의 競爭을 克服하기 위하여, 生産物의 質的向上 量的增大 勞動 原料의 節約을 圖謀하여 生産原價의 低廉을 期하고자 總力을 기울이게 되었다. 따라서 近代生産企業은 自己의 經營活動을 合理的 科學的으로 營爲해 나가야 繼續企業으로서 發展과 成長은 이룩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近代生産企業에 있어서 經營管理面에 原價計算의 利用이 크게 開發되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企業內部的 意思決定 資料로서도 그의 利用이 擴大되어 가고 있어, 原價計算은 研究面에 있어서나, 實務面에 있어서 현저한 發展을 하고 있다.

그런고로 企業의 窮極의 目的인 營利追求의 目的達成을 위하여서는 收益의 增大라는 一面도 存在하고 있지만 企業의 合理化를 圖謀하기 위한 手段으로 原價節減으로 因한 營利追求를 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點으로 보아 原價計算制度는 工業經營에서 뿐만 아니라 産業的 價値가 高度化한 水産業을 營爲하는 水産企業에도 그 適用이 時急히 要請되고 있는 實情이다.

最近 우리나라는 水産業에 對한 産業的 價値가 날로 높아 저서 새로운 認識가운데 水産部門에의 集中的인 投資가 이루어져 生産性(漁獲量)을 向上 시키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水産業은 다른 産業

* 群山水産專門學校

수 산 경 영 본 집

보다 월등히 높은 高度의 成長을 持續하여 世界 上位圈에 突入하고 있는데, 이와같이 水産業이 高度의 成長趨勢를 나타낸 것은 生産 輸出 流通 經營面에 있어서 後進性を 脫皮하고 近代化를 이룩해야겠다는 政府의 積極的인 開發施策에 基因된 것이라 하겠다.

이와같은 우리나라 水産業은 遠洋漁業 뿐만 아니라, 沿近海漁業의 一部에서도 老朽船舶의 新造漁船代替, 新裝置 및 새로운 漁法の 導入을 通하여 漁業經營체가 資本集約的인 企業形態로 轉換되어 가고 있다는 實情이다.

그러나 아직도 沿近海漁業의 많은 漁業經營체가 주먹구구식의 經驗과 因習에 依한 經營으로 一貫되어 있다는 事實로서 앞으로 漁業經營의 管理面에서 是正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말하면 諸經營管理技法의 運用 特히 計數에 依한 管理가 거의 等閑視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今일에 있어서의 漁業經營체는 資本集約的인 企業形態로 轉換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漁業經營체도 經營의 適否를 判定하고, 未來의 經營方針을 樹立하는데 有効한 計數에 依한 管理의 諸經營技法의 導入이 이루어져야 할 時點에 이르렀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本人은 資本制의 性格을 띤 近海 機船底引網漁業中 群山地方을 根據地港으로 하여 西海岸의 沿近海에서 操業을 하는 二艘引 中型機船底引網漁業에 對한 原價의 構成內容과 漁獲物의 單位當 漁撈事業原價計算을 通하여 이를 要約整理하고 그 結果를 明白히 分析表示 함으로서, 本 漁業에서 節減시켜야 할 原價項目을 찾아내고 原價發生에 關한 推勢를 把握 하므로써, 本 漁業의 適否判定 및 未來經營方針樹立에 도움을 주는 資料提供과 漁業經營에 計數的 管理의 必要性을 鼓吹시켜 주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Ⅱ. 調查研究의 概要

本資料는 西南區 機船底引網水産業協同組合 群山支所에 屬하는, 二艘引 中型機船底引網漁業(水産業法 第11條 第1項, 水産業法施行令 第14條 3의 2號에 依한 漁業) 操業統數 12統中에서 8個統數(業體)를 標本船으로 拔萃하여 調査된 資料이며, 1975年 1~12月까지 12個月 사이에 個個의 經營體(統)의 收支狀況을 調査 分析한 것이다. 이는 每月別로 漁獲金額 및 漁獲量(箱子當, kg當)과 費用項目으로 區分하여 調査 集計한 것이며, 漁獲金額은 總委販價格의 月別集計를 意味하며, 漁獲量은 月間 總委販量을 箱子數와 kg으로 區分하여 算出集計 하였으며, 費用項目은 다음과 같은 原價要素로 調査 한 것이다.

① 漁具費 ② 燃料費 ③ 處理費 ④ 消耗品費 ⑤ 船員配當金 ⑥ 給食費 ⑦ 船價償却費 ⑧ 漁船修理費 ⑨ 諸稅公課金 ⑩ 業務費 ⑪ 運搬料 ⑫ 販賣手數料 ⑬ 支給利子.

이와같은 方法으로 調査된 資料에 依하여, 二艘引 中型機船底引網漁業의 原價構成要素를 分析 把握하고자 原價의 要素別 原價計算을 하여 生産原價(漁撈事業原價)를 算出 하였으며, 다음은 販賣手數料 및 支給利子を 加算하여 總原價를 算出 하였는데, 여기에는 漁撈事業原價와 販賣手數料를 合한 總原價, 또한 漁撈事業原價와 販賣手數料 및 支給利子を 合한 總原價의 두가지 方法의 總原價를 算出 하였다. 이리하여 두가지 方法의 總原價에서 漁獲量(箱子數와 kg)으로 나누어 單位當 原價를 算出하여 보았다. 그리고 期間別(月原價, 年原價)로 原價를 나타 내었다.

二艘引 中型機船底引網漁業의 原價實態에 關한 研究

여기에서 調査된 原價要素의 項目은 漁獲物(箱子數와 kg)의 原價計算을 爲해 考慮한 原價要素構
造은 다음과 같다.

1. 材料費

- ① 漁具費 ② 燃料費 ③ 處理費 ④ 消耗品費.

2. 勞務費

- ① 船員配當金 ② 給食費

3. 經 費

- ① 船價償却費 ② 漁船修理費 ③ 諸稅公課金 ④ 業務費

4. 販賣手數料 및 支給利子

- ① 販賣手數料 ② 支給利子.

Ⅲ. 二艘引 中型機船底引網漁業의 概況

우리나라 近海漁業은 沿岸漁業에 比하여 經營規模가 크고 量産体制가 갖추어진 資本的 漁業으로
서, 1976年度 生産量은 總 417,566%으로서 漁業總生産量 2,406,896%의 17.3%를 占하였으며, 이
는 1962年の 64,844%에 比하여 6.4배가 增加된 것이며, 1975年度 生産量 353,951% 比하여는 18%
의 增加를 나타 냈고¹⁾, 近海漁業의 主要業種의 하나로서 機船底引網漁業을 들 수 있다.

機船底引網漁業은 우리나라 水産業中 典型的인 資本的 漁業의 하나이며, 漁船과 經營規模 漁網裝
置의 諸點에 있어서 가장 發達된 大規模 漁業이다. 本漁業은 沿岸에서 風力 潮力 人力에 依하여
曳引操業하던 帆船底引網漁業인 打瀬網漁業을 漁船의 動力化 大型化와 漁具 漁法을 改良하여 오늘
과 같이 發展하여 온 것이다. 最初에는 1903年 美國으로 부터 日本에 漁撈方法이 導入되어, 그後
試驗期間을 거치고 普及된 것은 1917年 以後이며 이 漁業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920年の
初期였다.²⁾ 그러므로 本漁業은 日本人이 導入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操業을 始作한 年代에 關하
여는 見解가 一定하지 않다.

日本の Trawler가 Steamer에 依하여 動力화된 것은 그 以前의 일이지만 底引網漁船의 動力化는
그 以後인 것이 分明하다. 그러므로 1910年以後 日本 漁船이 우리나라 沿岸에서 當時의 小型動力
手操網漁船으로 試驗操業을 하였다고 看做된다. 記錄에 나타난 것으로는 1919年 朝鮮殖産會社의
殖産丸(30馬力)이 許可를 얻어. 釜山 近海에서 操業한 것이 처음이다. 同年 釜山 影島를 根據로 하
여 朝鮮食品株式會社에서 30馬力 漁船 數隻을 新造 操業 하였으나, 魚價가 低廉하고 販路가 確保
되지 않았으므로 失敗 하였다. 1922년에는 林兼(現 大洋漁業株式會社) 이 4隻의 機船底引網으로
操業 하였으며, 下關을 基地로 西村數馬氏가 全南 沿岸에 進出 하였으나 좋은 成績을 거두지 못
하였다. 그러나 1936년부터 改良된 漁船으로 明太 漁獲에 從事하면서 부터 이 漁業은 本軌道

1) 水産廳 : 水産業動向에 關한 年次 報告書, 1977, p. 28

2) 水産廳 : 韓國水産史 1968, p. 742

에 올랐다.³⁾

機船底引網漁業 打瀨漁業 및 Trawl漁業은 漁具裝置와 規模의 大小에는 差異가 있으나, 漁撈方法에는 大同小異하며 主對象 漁獲物은 底棲魚族들이고, 元來 機船底引網漁業이 發達하기 以前의 打瀨網漁業은 歐美뿐만 아니라 韓國 日本에서도 볼 수 있었으며 그 當時로서는 他漁業에 比하여 生産力이 높은 漁業에 屬하고 있었으므로, 生産力이 낮은 沿岸漁業에 從事하고 있는 漁民과 利害關係가 相衝되어 兩者間에 紛爭이 頻發하게 發生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漁場의 秩序와 沿岸漁民의 保護를 위하여 打瀨網漁業은 沿岸漁民의 操業區域 밖으로 追放하게 되었으나, 이것이 오히려 漁船의 動力化 大型化 및 漁具 漁法의 改良을 促進시키는 結果가 되어 오늘의 機船底引網漁業으로 發展하게 된 것이다.

이 機船底引網漁業의 操業方法은 Europe에서도 거의 비슷한 經路를 거쳐 發達 하기는 했으나, 지금 우리나라에 導入된 것은 日本에서 發達한 것인데, 反하여 otter trawl 漁法은 起源의으로는 France에서 생겼으나 그後 英國에서 좀더 高度로 發達하여 日本을 거쳐 우리나라에 紹介된 것이다. 이것은 Europe의 二大 内海인 地中海와 Baltic Sea에서 使用되던 沿岸의 曳網漁法에서 發達한 것이다. 地中海의 沿岸曳網漁法으로서 代表的이던 것은 Cocchia 및 Tartana였는데, 前者는 二艘引이고 後者는 一艘引이 었다. 이들은 初期에는 모두 帆船을 使用했으나, 後에 機船이 發達되면서 부터 Cocchia는 二艘引機船底引網이 되었고, Tartana는 그後 아궁이에 一定한 크기의 틀(桁 또는 杵 Beam)을 裝置한 Beam trawl이 되었다가 機船이 發達한 後에 이 틀을 없애고, otter board라고 부르는 展開板을 쓰게 되었다.⁴⁾ 따라서 二艘引底引網이 比較的 海況이 거칠지 않는 中緯地方에서 發達했는데 比하여 trawl은 海況이 거친 高緯度地方에 까지도 그 偉力을 發揮하고 있다. 또 이런 意味에서는 一艘引底引網이 二艘引보다는 훨씬 수월하다는 것이다.

中型機船底引網漁業은 大型機船底引網漁業보다 漁船의 規模가 多少 작고 操業區域이 沿岸에 限定되어 있어 他漁業과의 調整 및 資源保護를 위하여 漁業許可 件數를 總 107件으로 制限하고 있는 바, 1976年末 現在 東海區 機船底引網漁業 42件, 西南海區 機船底引網漁業 65件으로 되어 있다.

1976年の 生産量을 보면 總 97,925%으로서 1975年の 86,167%에 比하여 14%의 增加를 보였다. 이 漁業에 投入된 漁船의 隻數를 보면 總 163隻으로서 前年에 比해 變動이 없으며, 20~50屯이 133隻으로 主軸을 이루고 있으며, 50~100屯級이 26隻 20屯未滿이 4隻으로 되어 있다. 船齡別로도 他漁業과 마찬가지로 老朽化 되어, 11年以上 漁船이 總 129隻으로 全體의 79%를 차지하고 있다.⁵⁾

中型機船底引網漁業은 水産業法 第11條 第1項, 水産業法施行令 第14條의 3의2號에 依하면 「船舶 總屯數 80屯未滿의 動力船에 依하여 底引網을 使用하여 採捕하는 漁業」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本 漁業의 組合인 西南區 機船底引網水産業協同組合 群山支所는 水産業協同組合法 第17條에 依하여 1967年 1月 30日字 西南區 中型機船底引網 漁業協同組合으로 發足 하였으며 그後 1972年 6月

3) 韓國經濟開發研究所：韓國水産業의 現況(上卷), 1966, p. 499

4) 李秉鎬：底引網漁業論, 1968, pp. 16~17

5) 水産廳：水産業動向에 關한 年次報告書, 1977, pp. 30~31

二艘引 中型機船底引網漁業의 原價實態에 關한 研究

30日字 機構改編으로 西南區 中型機船底引網 漁業協同組合의 本社를 釜山에 두고 群山과 方魚津 (現在 蔚山支所)에 支所를 設置 하였고, 1977年 4月 1日부터 西南區 中型機船底引網 水産業協同組合 群山支所로 改名 되었다. 西南海區 機船底引網漁業은 漁業許可件數가 65件인데, 現在 釜山에 는 51件으로 모두 一艘引 中型機船底引網漁業이며, 群산에 12件과 麗水에 2件인 14件은 二艘引 中型機船底引網漁業으로 되어 있다.

群山支所의 組合員 許可業者는 10人(二艘引)인데, 其中 2人은 2統을 所有하고 있어, 實際操業은 12統이 運行 實施하고 있다. 二艘引 中型機船底引網漁業의 統當從事者數는 平均 16名이고 1隻當 8~9名인 셈이며, 漁船屯數는 30~49屯의 範圍이고 平均 39屯이며, 機關은 全漁船이 燒球로서 120馬力이 2統 110馬力이 1統 105馬力이 1統 그외는 大部分 75馬力으로 全体平均 75馬力이다. 船質은 木船이 11艘, 鐵船이 1統이며, 船令은 大部分 10年以上이 지난 中古船으로 老朽化 됐으며, 新進船은 1統에 不過하다. 操業漁場은 主로 格列飛列島와 於靑島 北西쪽을 中心으로 하는 沿近海 海域이며, 主對象魚族은 가자미 꽃게 홍어 넓치 도다리 雜魚 등의 底棲魚種이다.

〈表-1〉 航海操業日數 및 引網回數

| 區分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合計 | 平均 |
|------|----|----|-----|-----|-----|-----|-----|---|-----|-----|-----|----|-------|-----|
| 月別 | | | | | | | | | | | | | | |
| 航海日數 | 24 | 14 | 6 | 30 | 30 | 29 | 15 | — | 16 | 30 | 23 | 27 | 269 | 25 |
| 操業日數 | 5 | 5 | 7 | 12 | 19 | 24 | 11 | — | 9 | 14 | 12 | 7 | 125 | 11 |
| 引網回數 | 37 | 32 | 53 | 87 | 130 | 159 | 85 | — | 71 | 107 | 94 | 45 | 900 | 82 |
| 引網時間 | 74 | 64 | 106 | 174 | 250 | 318 | 170 | — | 142 | 214 | 188 | 90 | 1,000 | 164 |

〈表-2〉 統當漁獲量 및 委販金額

| 區分 | 1 | 2 | 3 | 4 | 5 | 6 | 7 | |
|-----|----|-----------|-----------|-----------|-----------|-----------|-----------|-----------|
| 月別 | | | | | | | | |
| 金額 | 원 | 4,541,675 | 2,884,335 | 5,017,050 | 4,863,862 | 6,362,595 | 6,106,364 | 1,727,344 |
| 漁獲量 | 箱子 | 1,924 | 1,026 | 2,402 | 2,514 | 2,770 | 2,976 | 1,743 |
| | kg | 36,718 | 19,426 | 45,636 | 47,761 | 52,632 | 56,536 | 33,122 |

| 區分 | 8 | 9 | 10 | 11 | 12 | 合計 | 平均 | |
|-----|----|---|-----------|-----------|-----------|-----------|------------|-----------|
| 月別 | | | | | | | | |
| 金額 | 원 | — | 5,770,971 | 8,787,405 | 8,789,951 | 6,258,000 | 61,109,552 | 5,555,414 |
| 漁獲量 | 箱子 | — | 1,329 | 3,282 | 3,612 | 1,963 | 25,541 | 2,322 |
| | kg | — | 25,167 | 62,354 | 68,630 | 37,297 | 485,279 | 44,116 |

1975年度 本漁業의 航海日數 操業日數 및 引網回數를 表示하면 <表-1>과 같다.

1975年의 本漁業의 航海日數는 年 269日(月平均 25日)이고, 操業日數는 年 125日(月平均 11日)이며 年引網總回數는 900回(月平均 82回)로서 1回 引網時間은 2時間인 셈이다. 또한 統當 年漁獲量은 25,541箱子 (485,279kg)이고 月平均漁獲量은 2,322箱子 (44,116kg)이며, 總委販金額은 61,109,552원 (月平均 委販金額 5,555,414원)이 된 實情인데, 漁獲量은 春季인 3月~6月 사이와 秋季인 10月, 11월에 좋은 漁獲高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實際로 春季보다는 秋季가 漁獲成果가 좋은 便으로 春季는 秋季보다 操業日數가 많은데도 不拘하고, 漁獲量이 낮은 것을 보면 二艘引 中型機船底引網 漁業은 年中 秋季가 漁獲能率이 좋은 時期임을 提示해 주고 있다. 1975年度 本漁業의 統當漁獲量과 委販金額을 表示하면 <表-2>와 같다.

Ⅳ. 二艘引 中型機船底引網漁業의 原價要素의 分析

1. 材料費

本漁業에서의 材料費는 漁具費 燃料費 處理費 消耗品費로서 構成되어 있다.

漁具費는 漁網 및 漁網系 rope類 coal tar 浮子 其他 漁具附屬品費 一切와 當月中 支出한 漁具의 修理 또는 新造에 따른 金額을 말하며, 1975年度 總支出額은 7,830,239원(月平均支出額 711,840원)으로 總原價의 14.1%에 該當되고, 月別로 보면 가장 支出이 많은 달은 9月 (1,499,454원) 10月 (1,618,001원) 이고, 가장 支出이 적은 달은 7月 (217,162원) 로서 가장 많은 달의 7分の 1인 셈이다. 이는 二艘引 中型機船底引網漁業이 7月下旬부터 9月 初旬까지 漁獲의 不振과 魚價가 낮고 船舶定期檢査를 對備하여 休漁期를 맞아 操業을 中斷하고 그 時期에 漁船 및 漁具의 修理와 再整備을 하였기 때문에 漁具의 修理 및 再整備에 要했던 費用이 9月과 10월에 支出 되었으므로, 他月에 比하여 漁具의 支出費用이 많은 것이다. 反對로 7月은 操業이 中斷되기 始作되는 달로서 漁具의 使用頻度가 적어 漁具의 支出費用이 적은 實情이다.

燃料費는 重油·輕油 等の 購入代金으로 當月中 消耗된 油類費 一切의 金額을 말하며, 年總支出額은 13,086,639원(月平均 支出額 1,189,694원)으로 總原價의 23.6%로서 支出費用項目中 가장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船舶의 大部分이 老朽化와 舊式인 燒球機關을 使用한다는 點에서 燃料費의 過大支出 現象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月別로 보면 11月 (1,511,265원)이 가장 많이 支出된 달이고, 反對로 支出額이 적은 달은 2月 (802,246원)과 7月 (395,323원)이다. 燃料費는 月別 航海 및 操業日數와 比例關係를 가지고 있으므로, 月平均 航海日數 25日과 操業日數 11日에 比하여 航海·操業日數가 11월 (28日, 12日)은 많으나, 2月 (14日, 5日)과 7月(15日, 11日)은 적은 日數이기 때문에, 主로 航海·操業日數가 많은 春季인 3月~6月사이와 秋季인 10月 11월에 油類費가 많이 支出되고 있는 實情이다.

處理費는 當月中 漁獲物 處理에 使用된 魚箱子代와 얼음代를 合하여 支出된 金額이며, 年總支出額은 4,694,970원(月平均 支出額 426,816원)이고, 總原價의 8.5%에 該當되며, 月別로 보면 가장 支出額이 많은 달은 10月 (639,600원)과 11月(678,844원) 이고, 反對로 支出額이 적은 달은 7月

二級引 中型機船底引網漁業의 原價實態에 關한 研究

(114,307원)이다. 이는 漁獲量과 關係되므로 統當 月平均 漁獲量은 2,322箱子((44,116kg)인데, 이 中 가장 漁獲高가 좋은 11월은 3,611箱子(68,630kg)를 漁獲 했으며 가장 낮은 달인 7월은 1,722箱子(33,122kg)를 漁獲하여 가장 많은 달의 1/2程度의 漁獲高를 나타 내므로, 處理費는 漁獲量이 높은 秋季에 支出이 많은 實情이다.

消耗品費는 消耗性 諸用品의 購入代金으로 當月中 消耗한 消耗品費 一切를 合한 支出金額이며, 年總支出額은 1,415,814원(月平均 支出額 128,710원)이고, 總原價의 2.6%에 該當되며, 月別로 보면 가장 支出額이 많은 달은 11월 (213,402원)이고, 가장 支出額이 적은 달은 7월(64,048원)이다. 消耗品費는 航海·操業日數와 比例하여 支出의 多寡를 形成하므로, 航海·操業日數가 많은 春季와 秋季에 支出이 많고, 그와 反對로 적은 夏季에 支出額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材料費의 1975年度 總支出額은 27,027,662원(月平均 支出額 2,457,060원)으로 總原價의 48.8%~50.4%, 生産原價의 54.3%를 차지하여 總費用中 半以上을 占하고 있는 實情이다. 材料費中에서는 燃料費가 48.4%로서 가장 많이 支出됐으며, 다음은 漁具費 29%, 處理費 17.4%, 消耗品費 5.2%의 構成比率로 支出 되었다. 또한 月別로 보면 10월 (3,481,982원)이 가장 많이 支出됐고, 가장 적은 달은 7월 (790,840원)로서 가장 많이 支出된 달의 4分の 1 程度이다. 그러므로 本漁業의 材料費는 航海·操業日數와 關聯하여 漁撈事業活動이 活發해진 秋季와 春季에 支出이 많음을 알수 있다. 特

〈表-3〉 材 料 費 (單位: 원)

| 月別 | 1 | 2 | 3 | 4 | 5 | 6 | 7 |
|------|-----------|-----------|-----------|-----------|-----------|-----------|---------|
| 原價要素 | | | | | | | |
| 漁具費 | 473,572 | 539,235 | 550,384 | 438,676 | 629,465 | 345,107 | 217,162 |
| 燃料費 | 1,273,382 | 802,246 | 1,441,181 | 1,319,220 | 1,215,967 | 1,390,142 | 395,323 |
| 處理費 | 618,950 | 205,212 | 398,116 | 383,504 | 451,617 | 328,254 | 114,307 |
| 消耗品 | 81,222 | 104,958 | 150,994 | 176,223 | 123,473 | 162,526 | 64,048 |
| 合計 | 2,447,126 | 1,651,651 | 2,540,675 | 2,317,623 | 2,420,522 | 2,226,029 | 790,840 |

| 月別 | 8 | 9 | 10 | 11 | 12 | 合計 | 平均 | % |
|------|---|-----------|-----------|-----------|-----------|------------|-----------|------|
| 原價要素 | | | | | | | | |
| 漁具費 | — | 1,499,454 | 1,618,001 | 763,460 | 755,723 | 7,830,239 | 711,840 | 29.0 |
| 燃料費 | — | 1,323,809 | 1,110,698 | 1,511,265 | 1,303,406 | 13,086,639 | 1,189,694 | 48.4 |
| 處理費 | — | 421,681 | 639,600 | 678,844 | 454,885 | 4,694,970 | 426,816 | 17.4 |
| 消耗品費 | — | 113,780 | 113,683 | 213,402 | 111,505 | 1,415,814 | 128,710 | 5.2 |
| 合計 | — | 3,358,724 | 3,481,982 | 3,166,971 | 2,625,519 | 27,027,662 | 2,457,060 | 100 |

수 산 경 영 본 집

히 材料費의 支出이 많은 까닭은 大部分의 船舶이 老朽化하고 舊式인 燒球機關를 使用 하므로, 燃料費와 漁具費의 支出이 많기 때문이다.

1975年度 本漁業의 材料費 原價要素를 表示하면 <表-3>과 같다.

2. 勞 務 費

本漁業에서의 勞務費는 船員配當金과 給食費로서 構成되어 있다.

船員配當金은 船員保合率(깃가림 賃金制)에 依한 當該月에 該當金額 또는 月給制에 依한 船員給料의 支出額을 말하며, 1975年度 總支出額은 7,899,068원(月平均 支出額 718,097원)으로 總原價의 14.3%에 該當되고, 月別로 보면 가장 支出額이 많은 달은 11월((1,566,635원)이고, 5월이 支出額이 가장 적게 表示되어 있으나 5월은 賃金計算을 하지 않고 6월에 計算되었기 때문이며, 實際로는 7월(254,033원)과 9월 (123,810원)이 가장 적게 船員給料가 配當되어 있는 實情이다.

船員配當金은 能率給制로서 月別 委販金額과 關係 되므로, 漁獲量이 많고, 魚價가 높을수록 船員들에게 支給되는 給料는 比例하여 많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本漁業의 總委販金額은 61,109,552원(月平均 委販金額 5,555,414원)이고, 委販金額이 가장 높은 달은 11월(8,789,951원)로서 이에 따라 船員配當金도 11월이 가장 많이 配當된 現象이며, 그와 反對로 7월(1,727,344원)과 9월 (5,770,971원)은 낮은 委販金額을 나타내어 船員配當金도 적게 配當된 實情이다. 이는 7月下旬부터 9月初旬까지 休漁期를 맞아 操業이 中斷되어 操業日數가 적어 漁獲實績이 낮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漁業經營의 賃金形態가 一般製造業經營과는 달리 固定給制를 採擇치 않고, 能率給制를 擇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으며, 이 能率給制인 깃가림 賃金形態를 擇하고 있는 것은 漁業經營의 特殊性인 成果不確實性이라는 原因이 크게 支配받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給食費는 매달 主 消費한 船員들의 主食費와 副食費의 支出額을 말하며, 年總支出額은 2,481,945

<表-4> 勞 務 費 (單位: 원)

| 原價要素 \ 月別 | 1 | 2 | 3 | 4 | 5 | 6 | 7 |
|-----------|---------|---------|-----------|---------|---------|-----------|---------|
| 船員配當金 | 576,012 | 355,433 | 870,594 | 658,236 | 30,000 | 1,156,652 | 254,033 |
| 給食費 | 146,224 | 255,082 | 205,780 | 179,296 | 231,487 | 199,880 | 82,550 |
| 合 計 | 722,236 | 610,515 | 1,076,374 | 837,532 | 261,487 | 1,356,532 | 336,583 |

| 原價要素 \ 月別 | 8 | 9 | 10 | 11 | 12 | 合 計 | 平 均 | % |
|-----------|---|---------|-----------|-----------|-----------|------------|---------|------|
| 船員配當金 | — | 123,810 | 1,325,428 | 1,566,635 | 982,235 | 7,899,068 | 718,097 | 76.1 |
| 給食費 | — | 240,804 | 343,846 | 314,755 | 282,241 | 2,481,945 | 225,631 | 23.9 |
| 合 計 | — | 364,614 | 1,669,274 | 1,881,390 | 1,264,476 | 10,381,013 | 943,728 | 100 |

원(月平均 支出額 225,631원)이고 總原價의 4.5%에 該當되며, 月別로 보면 가장 支出額이 많은 달은 10月(343,846원)과 11月(317,755원)이고, 가장 적은 달은 7月(82,550원)로 나타났으며 이는 主로 操業日數의 多寡에 따라 形成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

勞務費의 年總支出額은 10,381,013원(月平均 支出額 943,728원)으로 總原價의 18.8%~19.4%이며 生産原價의 20.9%를 차지 했으며, 勞務費中에서는 船員配當金 76.1%와 給食費 23.9%의 構成比率로 支出된 셈이다. 또한 月別로 보면 10月(1,669,274원)과 11月(1,831,390원)인 秋季가 높은 傾向이고, 反對로 낮은 달은 7月(336,583원)과 9月(364,614원)인 夏季이다. 그러므로 勞務費는 漁獲實績의 漁獲量에 따른 委販金額과 航海·操業日數에 比例하여 나타내고 있음을 알수있다.

1975年度 本漁業의 勞務費 原價要素를 表示하면 <表-4>와 같다.

3. 經 費

本漁業에서의 經費는 船價償却費 漁船修理費 諸稅公課金 業務費 運搬料로서 構成되어 있다.

船價償却費는 固定資産의 減價償却會計에 依하여 處理되는 費用配分의 過程에 따른 期間費用의 計算過程이라 할 수 있다. 즉 減價償却會計란 固定資産이 時間의 經過나 使用중에 依하여(物理的原因) 또는 舊式化 不適當 不適應등에 依하여(機能的原因), 그 價値가 減少된 것을(減價), 어떤 人爲的인 方法에 依하여 計算하고, 그 減價額을 當該 資産의 帳簿價額에서 減額 除去하는 會計節次를 말한다. 水産業에서와 같이 많은 固定資産을 保有하고 있는 企業에서는 固定資産의 減價償却會計는 重要하며, 또 會計의 正確性 信憑性 如否는 減價償却 會計에서 큰 影響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減價償却會計의 目的은 正確한 損益計算을 하고, 貸借對照表에 眞實性이 있는 計數를 表示하며 企業資本을 堅實히 維持하려는데 그 窮極의 目的이 있다.

여기에서 本人은 船價償却費를 月別로 算出하는 方法으로서 殘存價額은 取得原價의 10%로 看做하여, 算出公式; $\frac{\text{取得原價}-\text{殘存價額}}{\text{耐用年數}} \times \frac{1}{12} = \text{減價費}$ 에 依하여 計算하였다. 그러므로 年船價償却費는 1,341,706원(月平均 船價償却費 121,973원)으로 算出 됐으며, 總原價의 2.4%에 該當된 셈이다. 月別로 보면 11月(201,064원)에 가장 많이 減價되었고, 7月(37,554원)이 가장 적게 減價되었다.

漁船修理費는 當月中 修理한 船體 및 機關의 修理費 一切를 合하여 支出된 金額이며, 年總支出額은 7,186,357원(月平均 支出額 653,305원)으로 總原價의 13%이다. 漁船修理는 大体로 每月 部分的인 修理로서 支出되고 있으나, 實際 漁船의 全体修理는 7月下旬부터 9月初旬까지 休漁期를 맞아 操業을 中斷하고 實施 했는데, 本漁船은 大部分 老朽化된 船舶으로 船舶定期檢査를 對備하여 이 休漁期를 利用하여 修理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9月은 年中 總支出額의 半에 가까운 2,846,276원의 修理費를 支出하였다. 1975年度 實例로서 標本漁業經營體 8統 모두가 休漁期에 操業을 中斷하고 漁船 漁具의 修理와 再整備에 임하였기 때문에, 本資料에 8月은 收支狀況이 全然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6) 任翹淳著; 財務管理, 1970, p. 86

수 산 경 영 른 집

諸稅公課金은 當月中 支拂한 許可稅, 財産稅, 組合賦課金, 其他 公課金 등을 合하여 支出된 金額으로, 年總支出額은 總原價의 2.5%에 該當되는 1,407,446원(月平均 支出額 127,950원)이며, 月別로 보면 大體로 租稅賦課의 時期에 따라 差額의 程度가 다르게 나타 났다고 생각된다,

業務費는 當月中 支給한 無電使用料 無電機修理, 漁撈活動에 다른 電報 郵便料金 旅費交通費, 用品費 諸手續費 및 其他 業務費등을 合한 金額을 말하며, 年總支出額은 877,848원(月平均 支出額 79,804원)으로 總原價의 1.6%로서 原價要素中 가장 낮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運搬料는 漁獲物의 運搬이나 漁具·主副食費 및 船用品의 運搬에 따른 支給額을 말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漁撈船에서 漁獲物을 揚陸港에 運搬하여 준 費用을 말한다. 特히 本漁業에서는 船主自身이 15屯~20屯의 運搬船을 所有한者가 있어, 運搬料의 計算은 運搬船에 從事하는 船員들의 賃金形態로 支給하기 위하여 運搬된 漁獲物 總委販金額의 10%를 控除하여 支拂되고 있다, 年總支出額은 1,525,351원(月平均 支出額 138,668원)으로 總原價의 12.4%이며, 月別로 보면 漁獲高가 좋은 春季(4月~6月)와 秋季(10, 12月)만이 支出되고 있는 實情이므로 運搬船은 春季와 秋季에 利用

〈表-5〉 經 費 (單位: 원)

| 月別 | 1 | 2 | 3 | 4 | 5 | 6 | 7 |
|-------|---------|---------|---------|---------|---------|---------|---------|
| 原價要素 | | | | | | | |
| 船價償却費 | 99,636 | 71,452 | 131,547 | 146,432 | 86,576 | 131,770 | 37,554 |
| 漁船修理費 | 301,977 | 194,257 | 354,957 | 310,889 | 299,848 | 326,482 | 188,130 |
| 諸稅公課金 | 77,200 | 227,903 | 71,853 | 87,541 | 158,100 | 192,810 | 52,340 |
| 業務費 | 42,794 | 26,010 | 38,984 | 61,977 | 74,917 | 53,009 | 103,063 |
| 運搬料 | — | — | — | 154,460 | 146,500 | 268,399 | — |
| 合計 | 521,607 | 519,622 | 597,341 | 761,299 | 765,941 | 972,470 | 381,087 |

| 月別 | 8 | 9 | 10 | 11 | 12 | 合計 | 平均 | % |
|-------|---|-----------|-----------|-----------|-----------|------------|-----------|------|
| 原價要素 | | | | | | | | |
| 船價償却費 | — | 101,456 | 190,531 | 201,064 | 143,688 | 1,341,706 | 121,973 | 10.9 |
| 漁船修理費 | — | 2,846,276 | 770,252 | 1,116,023 | 477,266 | 7,186,357 | 653,305 | 58.2 |
| 諸稅公課金 | — | 171,786 | 92,120 | 214,337 | 61,456 | 1,407,446 | 127,950 | 11.4 |
| 業務費 | — | 126,250 | 190,215 | 60,179 | 100,450 | 877,848 | 79,804 | 7.1 |
| 運搬料 | — | — | 484,354 | 197,246 | 274,392 | 1,525,351 | 138,668 | 12.4 |
| 合計 | — | 3,245,768 | 1,727,472 | 1,788,849 | 1,057,252 | 12,338,708 | 1,121,700 | 100 |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經費의 年總支出額은 12,388,708원(月平均 支出額 1,121,700원)으로 總原價의 22.3%~23%이며, 生産原價의 24.8%의 支出構成率을 나타냈다. 經費中에서는 漁船修理費가 58.2%로서 가장 많고, 다음은 運搬料 12.4% 諸稅公課金 11.4% 船價償却費 10.9% 業務費 7.1%의 構成比率로 支出되었다. 月別로 보면 9月(3,245,768원)이 가장 많이 支出됐고, 7月(381,087원)이 가장 적게 支出된 셈이다. 經費는 本漁業의 老朽船舶으로 因한 漁船修理費의 過大支出 現象이 나타나고 있으며, 經費中에서도 漁船修理費가 半以上을 차지 한데다가 漁船修理費가 6月中에 年支出의 半에 가까운 費用 때문에 9月이 가장 많은 經費가 支出 되었다.

1975年度 本漁業의 經費原價要素를 表示하면 <表-5>와 같다.

4. 販賣手數料 및 支給利子

販賣手數料는 當月中 支拂한 委販手數料 魚箱子揚陸費 및 配列費를 合한 金額으로서, 年總支出額은 3,833,932원(月平均 支出額 348,539원)이고 總原價의 6.9%이다. 月別로 보면 10月(600,600원)과 11月(596,120원)이 가장 많이 支出 됐으며, 7月(85,135원)이 가장 적게 支出 되었다. 販賣手數料는 揚陸된 漁獲量의 委販金額에 따라 比例하여 나타나며, 委販手數料는 總委販金額의 100分之 4를 支拂하고 있다. 그러므로 委販量이 많은 秋季에 販賣手數料가 많이 支出된 셈이다.

支給利子는 當월에 支拂한 水協 農協 銀行 및 私債의 利子를 合計한 金額이며, 年 總支出額은 1,772,492원(月平均 支出額 161,136원)으로 總原價의 3.2%에 該當되며, 月別로 보면 4月(366,381원)이 가장 많이 支拂되고 7月은 支給利子가 나타나 있지 않으나 支給利子의 支出은 거의 大同小異한 傾向이다.

그러나 本漁業에서 一般管理費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점은 漁業自體의 經營規模가 平均 39屯의 老朽化된 中型漁船으로, 操業漁場이 群山港과 가까운 沿近海漁場(格列飛列島와 於靑島 사이)이며, 漁船 1統의 所有者의 船主가 大部分이므로 經營規模가 적어 船主들의 經營活動 範圍가 限定된 地

<表-6> 販賣手數料 및 支給利子 (單位: 원)

| 原價要素 \ 月別 | 1 | 2 | 3 | 4 | 5 | 6 | 7 |
|-----------|---------|---------|---------|---------|---------|-----------|---------|
| 販賣手數料 | 366,330 | 18,702 | 301,413 | 296,524 | 311,978 | 408,763 | 85,135 |
| 支給利子 | 196,628 | 62,767 | 87,889 | 366,381 | 115,061 | 198,593 | — |
| 原價要素 \ 月別 | 8 | 9 | 10 | 11 | 12 | 合 計 | 平 均 |
| 販賣手數料 | — | 432,506 | 600,600 | 596,120 | 415,861 | 3,833,932 | 348,539 |
| 支給利子 | — | 221,293 | 190,754 | 129,532 | 203,594 | 1,772,492 | 161,136 |

수 산 경 영 른 집

域에서 營爲되고 있기 때문이다. 船主들의 通信費 交通費 接待費 등의 管理費가 慣例上 無視되어 帳簿上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實質적으로 支出金額이 있다고 보겠으나, 正確한 資料調査가 實施되지 않았기에 本資料整理에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1975年度 本漁業의 販賣手數料 및 支給利子를 表示하면 <表-6>과 같다.

<表-7> 生産原價와 總原價 (單位: 원)

| 月別 | 1 | 2 | 3 | 4 | 5 | 6 | 7 | |
|----------------|--------------------|---------------------|---------------------|---------------------|---------------------|---------------------|--------------------|------|
| 原價要素 | | | | | | | | |
| 材 料 費 | 2,447,126 | 1,651,651 | 2,540,675 | 2,317,623 | 2,420,522 | 2,226,029 | 790,840 | |
| 勞 務 費 | 722,236 | 610,515 | 1,076,374 | 837,532 | 261,487 | 1,356,532 | 336,583 | |
| 經 費 | 521,607 | 519,622 | 597,341 | 761,299 | 765,941 | 972,470 | 381,087 | |
| 漁撈事業原價 | 3,690,969 | 2,781,788 | 4,214,390 | 3,916,454 | 3,447,950 | 4,555,031 | 1,508,510 | |
| 販賣手數料 | 366,330 | 18,702 | 301,413 | 296,524 | 311,978 | 408,763 | 85,135 | |
| 總 原 價 (1) | 4,057,299 | 2,800,490 | 4,515,803 | 4,212,978 | 3,759,928 | 4,963,794 | 1,593,645 | |
| 販賣手數料및 支給利子 | 562,958 | 81,469 | 389,302 | 662,905 | 427,039 | 607,356 | 85,135 | |
| 總 原 價 (2) | (7.7) 4,253,927 | (5.2) 2,863,257 | (8.3) 4,603,692 | (8.3) 4,579,359 | (70) 3,874,989 | (9.3) 5,162,387 | (2.9) 1,593,645 | |
| 月別 | 8 | 9 | 10 | 11 | 12 | 合 計 | 平 均 | % |
| 原價要素 | | | | | | | | |
| 材 料 費 | — | 3,358,724 | 3,481,982 | 3,166,971 | 2,625,519 | 27,027,662 | 2,457,060 | 54.3 |
| 勞 務 費 | — | 364,614 | 1,669,274 | 1,881,390 | 1,264,476 | 10,381,013 | 943,728 | 20.9 |
| 經 費 | — | 3,245,768 | 1,727,472 | 1,788,849 | 1,057,252 | 12,338,708 | 1,121,700 | 24.8 |
| 漁撈事業原價 | — | 6,969,106 | 6,878,728 | 6,837,210 | 4,947,247 | 49,747,383 | 4,522,488 | 100 |
| 販賣手數料 | — | 432,506 | 600,600 | 596,120 | 415,861 | 3,833,932 | 348,539 | 7.2 |
| 總 原 價 (1) | — | 7,401,612 | 7,479,328 | 7,433,330 | 5,363,108 | 53,581,315 | 4,871,027 | 100 |
| 販賣手數料및 支給利子 | — | 653,799 | 791,354 | 752,652 | 619,455 | 5,606,424 | 509,675 | 10.1 |
| 總 原 價 (2) | — | (13.8) 7,622,905 | (13.8) 7,670,082 | (13.6) 7,562,862 | (10.1) 5,566,702 | (100) 55,353,807 | 5,032,163 | 100 |

註: ()안의 數字는 百分率임.

二艘引 中型機船底引網漁業의 原價實態에 關한 研究

以上에서 二艘引 中型機船底引網漁業을 原價要素別(材料費 勞務費 經費 販賣手數料 및 支給利子)로 分析 把握 하였으며, 그 結果로서 生産原價 및 總原價를 綜合集計·算出하였다. 本漁業의 1975年度 生産原價(漁撈事業原價) 및 總原價를 表示하면 <表一7>과 같다.

여기에서의 資料整理에 總原價를 算定하는데는 두가지 方法을 實施하였다. 總原價 算出에 있어서 原價項目中 支給利子를 計算하지 않는 說(1)과 支給 利子까지 包含하여 計算하는 說(2)이 있다. <表一7>에 있어서 總原價 (1)은 生産原價(漁撈事業原價)에 販賣手數料를 合한 金額이며, 總原價(2)는 生産原價(漁撈事業原價)에 販賣手數料와 支給利子 合計額을 合한 것으로서 算出하였다.

本 漁業에서 1975年度 總原價 (1)은 53,581,315원(月平均 總原價 4,871,027원)으로 生産原價가 92.8%이고, 總原價(2)는 55,353,807원(月平均 總原價 5,032,163원)으로 生産原價는 89.9%로서 支給利子の 僅少와 一般管理費가 나다나 있지 않기 때문에 總原價 (1)과 (2)는 거의 같은 結果를 招來하고 있다. 月別로 보면 總原價에 對하여 13.6%~13.8%를 차지한 9月~11月 사이인 秋季에 많은 費用이 支出되고 있는 實情이다.

이런 點으로 보아 本漁業은 거의가 生産原價(漁撈事業原價)로서 投下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漁業生産에 投下되고 있다는 것은 거의가 漁撈事業費로서 營爲되고 있다는 것인데, 本漁業은 주로 秋季에 많은 費用이 支出되고 있으며 特히 9月에서는 漁船漁具의 修理와 再整備에 所要된 經費의 支出이 過大하게 나타 나 本漁業의 經營實態의 한面을 보여 주었고, 秋季에 있어서 漁撈事業活動이 活發히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V. 二艘引 中型機船底引網漁業의 漁撈事業原價計算

一般的으로 原價計算의 歷史는 比較的 짧고, 産業革命의 影響을 받아 19世紀의 產物로서 20世紀에 들어와 急速한 發展을 한 것이라고 한다.⁷⁾ 産業革命으로 因한 工場制度의 確立은 固定設備의 增大와 企業의 大規模化를 招來하고, 從前에 없던 減價償却費와 같은 製進間接費의 問題를 가져오고, 激甚한 自由競爭은 利潤率의 低下 原價節減의 必要 資本의 集中으로 因한 獨占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環境속에서 正確한 損益計算 價格의 決定 및 原價管理 등을 目的으로 하는 原價計算制度가 하나의 會計制度로서 要請되고 있으며, 實로 原價計算制度는 이러한 事情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發展되었던 것이다.⁸⁾

本來 原價計算의 方法은 製造工業으로 부터 發展되어 모든 産業分野에 適用된 것이므로 漁撈事業의 原價計算도 原則적으로 一般製造工業의 原價計算方法을 援用하여 實施하게 된다.

漁撈事業이란 漁船과 漁具를 使用하여 海中의 魚類를 捕獲 販賣하는 事業을 말하며, 이때 捕獲한 魚類를 “漁獲物”이라 한다. 漁撈事業은 一般製造工業과는 그 業態가 여러가지로 달라서 原價計算에 있어서도 特殊한 事例가 發生한다. 즉 漁撈事業 있어서는 主要材料費의 消費는 없고, 또 어떤 一

7) A. C. Littleton, Accounting Evolution to 1970. 片野一郎譯, 日 들튼會計 發達史, p. 437

8) 尹根鎬著; 最新原價計算, 1968, p. 1

定期間 操業으로도 漁獲物이 全無한 境遇가 發生할 수 있는 反面 腐敗性이 甚하여 資本投下에 對한 結實이 不確實하다는 點이다. 이런 現象은 一般製造工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漁撈事業原價計算은 漁獲物을 捕獲하기 까지 消費한 經濟價値를 漁獲物 一定單位當 (箱子當·kg當)으로 計算하는 것을 말한다. 漁撈事業原價計算을 一般沿岸漁業이나 零細한 漁家漁業에 까지 適用·實施한다는 것은 그 業態나 會計能力面에서 볼때 무리한 것이며, 遠洋漁業이나 近海漁業의 範圍에나 適用해야 할 것이다.⁹⁾ 그러나 漁撈事業原價計算을 一般 沿岸漁業이나 零細한 漁家漁業에 까지 適用實施 한다는 것은 原價의 構成內容과 漁獲物의 單位當 漁撈事業原價計算을 通하여 節減시켜야 할 原價項目을 찾아내고 原價發生에 關한 推勢를 把握 함으로서 漁業經營에 計數的 管理의 必要性을 鼓吹시켜 주는데 그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다만 中小漁業에서는 期間計算의인 商業簿記의 方式으로 漁撈事業原價計算을 實施하는 것으로 滿足해야 한다.

漁撈事業의 原價計算은 그 性格上 綜合原價計算方法에 依하게 되는데, 綜合原價計算은 市場을 目標로 하여 標準화된 製品을 繼續 大量生産하는 企業에 있어서 主로 適用하는 原價計算의 方法이다. 그 計算의 特徵은 一定한 期間(原價計算期間)에 發生한 總製造費用을 그 期間의 生産數量으로서 除하여 單位當의 原價를 算出하는 것이다. 그런데 大概 單船式漁業은 單純綜合原價計算을, 母船式漁業은 工程別 綜合原價計算이나, 連產品原價計算方法을 採擇하고 있다. 이런 點으로 보아 本漁業은 單船式 漁業의 경우로서, 單純綜合原價 計算方法에 依하여 原價를 算出하여야 될 것이다. 즉 單純綜合原價計算은 生産過程이 至極히 單純하여 單一한 工程을 거쳐서 製品이 完成될 경우에는 一定한 期間의 總製造費用(總原價)을 그 期間의 生産數量으로 除하므로써 簡單히 算出될 수 있다.¹⁰⁾

그러므로 本漁業의 漁獲物 原價計算은 單純綜合原價計算方法에 依하여 漁獲物 單位當原價를 箱子 및 kg別로 算出해 보았다. 또한 總原價 算出에 있어서 原價要素中 支給利子の 項目을 計算치 않는 說 ①과, 計算하여 總原價를 算出하는 說②이 있기 때문에 總原價를 두가지 方法으로 計算했으며, 漁獲物 單位當 原價計算에 있어서는 總原價①, ②의 둘을 漁獲物數量(箱子 및 kg)에 各各 適用 算出하여 두가지 漁獲物 單位當 原價를 나타냈다.

1975年度 二艘引 中型機船底引網漁業의 漁獲物 原價計算表를 表示하여 보면 <表-8>과 같다.

1975年度 本漁業의 漁獲物 單位原價(箱子當, kg當)는 總原價 ①(53,581,315원)에 對하여 箱子當 2,098원이고 kg當 110원이었으며, 總原價 ②(55,353,807원)에 對해서는 箱子當 2,167원이고 kg當 114원으로 算出됐다. 總原價 ①, ②에 依한 箱子當單位 原價는 69원, kg當 單位原價는 4원의 差異가 생겼으나 支給利子が 總原價에 比하여 아주 僅少하기 때문에 總原價 ①, ②에 依한 漁獲物單位 原價는 僅少한 差異로 나타 났다. 月別로 보면 漁獲物 單位原價는 大体로 秋季와 冬季에 높고, 春季와 夏季는 낮은 傾向이다. 特히 9月은 漁獲物 單位原價가 아주 높게 나타 났는데, 이는 漁船修理費의 過大支出로 基因된 것이다.

9) 姜吉遠著; 水産簿記, 1968, pp. 157~161

10) 尹根鎬著; 最新原價計算, 1968, p. 46

二艘引 中型機船底引網漁業의 原價實態에 關한 研究

<表-8>

漁獲物 原價計算表

1975. 1. 1. ~ 1975. 12. 31.

| 原價要素 | 月別 | 1 | 2 | 3 | 4 | 5 | 6 | 7 |
|-----------|----|-----------|-----------|-----------|-----------|-----------|-----------|-----------|
| I. 材料費 | | | | | | | | |
| 漁具費 | | 473,572 | 539,235 | 550,384 | 438,676 | 629,465 | 345,107 | 217,162 |
| 燃料費 | | 1,273,382 | 802,246 | 1,441,181 | 1,319,220 | 1,215,967 | 1,390,142 | 395,323 |
| 處理費 | | 618,950 | 205,212 | 398,116 | 383,504 | 451,617 | 328,254 | 114,307 |
| 消耗品費 | | 81,222 | 104,958 | 150,994 | 176,223 | 123,473 | 162,526 | 64,048 |
| II. 勞務費 | | | | | | | | |
| 船員配當金 | | 576,012 | 355,433 | 870,594 | 658,236 | 30,000 | 1,156,652 | 254,033 |
| 給食費 | | 146,224 | 255,082 | 205,780 | 179,296 | 231,487 | 199,880 | 82,550 |
| III. 經費 | | | | | | | | |
| 船價償却費 | | 99,636 | 71,452 | 131,547 | 146,432 | 86,576 | 131,770 | 37,554 |
| 漁船修理費 | | 301,977 | 194,275 | 354,957 | 310,889 | 299,848 | 326,482 | 188,130 |
| 諸稅公課金 | | 77,200 | 227,903 | 71,853 | 87,541 | 158,100 | 192,810 | 52,340 |
| 業務費 | | 42,794 | 26,010 | 38,984 | 61,977 | 74,917 | 53,009 | 103,063 |
| 運搬料 | | — | — | — | 154,460 | 146,500 | 268,399 | — |
| 漁撈事業原價合計 | | 3,690,969 | 2,781,788 | 4,214,390 | 3,916,454 | 3,447,950 | 4,555,031 | 1,508,510 |
| 販賣手数料 | | 366,330 | 18,702 | 301,413 | 296,524 | 311,978 | 408,763 | 85,135 |
| 支給利子 | | 196,628 | 62,767 | 87,889 | 366,381 | 115,061 | 198,593 | — |
| 總原價 ① | | 4,057,299 | 2,800,490 | 4,515,803 | 4,212,978 | 3,759,928 | 4,963,794 | 1,593,645 |
| 總原價 ② | | 4,253,927 | 2,863,257 | 4,603,692 | 4,579,359 | 3,874,989 | 5,162,387 | 1,593,645 |
| 漁獲物數量(箱子) | | 1,924 | 1,026 | 2,402 | 2,514 | 2,770 | 2,976 | 1,743 |
| 單位當原價 ① | | @ 2,109 | @ 2,730 | @ 1,880 | @ 1,676 | @ 1,357 | @ 1,668 | @ 914 |
| 單位當原價 ② | | @ 2,211 | @ 2,791 | @ 1,917 | @ 1,822 | @ 1,399 | @ 1,735 | @ 914 |
| 漁獲物數量(kg) | | 36,718 | 19,426 | 45,636 | 47,761 | 52,632 | 56,536 | 33,122 |
| 單位當原價 ① | | @ 111 | @ 144 | @ 99 | @ 88 | @ 71 | @ 88 | @ 48 |
| 單位當原價 ② | | @ 116 | @ 147 | @ 101 | @ 96 | @ 74 | @ 91 | @ 48 |
| 販賣金額 | | 4,541,675 | 2,884,335 | 5,017,050 | 4,863,862 | 6,362,595 | 6,106,364 | 1,727,344 |
| 賣出原價率(%) | | 93.7 | 99.3 | 91.8 | 94.2 | 60.9 | 84.5 | 92.3 |
| 利益率(%) | | 6.3 | 0.7 | 8.2 | 5.8 | 39.1 | 15.5 | 7.7 |

註：①은 原價要素中 支給利子를 計算치 않은 總原價와 그에 對한 單位當原價(箱子 및 kg)임.

②는 原價要素의 總合計인 總原價와 그에 對한 單位當原價(箱子 및 kg)임.

수 산 경 영 본 집

(單位 : 원)

| 原價要素 | 月別 | 8 | 9 | 10 | 11 | 12 | 合 計 | 平 均 | % |
|-----------|----|-----------|-----------|-----------|-----------|------------|-----------|------|---|
| I. 材料費 | | | | | | | | | |
| 漁具費 | — | 1,499,454 | 1,618,001 | 763,460 | 755,723 | 7,830,239 | 711,840 | 14.1 | |
| 燃料費 | — | 1,323,809 | 1,110,698 | 1,511,267 | 1,303,406 | 13,086,639 | 1,189,694 | 23.6 | |
| 處理費 | — | 421,681 | 633,600 | 678,844 | 454,858 | 4,694,970 | 426,816 | 8.5 | |
| 消耗品費 | — | 113,780 | 113,683 | 213,402 | 111,505 | 1,415,814 | 128,710 | 2.6 | |
| II. 勞務費 | | | | | | | | | |
| 船員配當金 | — | 123,810 | 1,325,428 | 1,566,635 | 982,235 | 7,899,068 | 718,097 | 14.3 | |
| 給食費 | — | 240,804 | 343,846 | 314,755 | 282,241 | 2,481,945 | 225,631 | 4.5 | |
| III. 經費 | | | | | | | | | |
| 船價貲却費 | — | 101,455 | 190,531 | 201,064 | 143,688 | 1,341,705 | 121,973 | 2.4 | |
| 漁船修理費 | — | 2,845,276 | 770,252 | 1,116,023 | 477,266 | 7,186,357 | 653,305 | 13.0 | |
| 諸稅公課金 | — | 171,786 | 92,120 | 214,337 | 61,456 | 1,407,446 | 127,950 | 2.5 | |
| 業務費 | — | 126,250 | 190,215 | 60,179 | 100,450 | 877,848 | 79,804 | 1.6 | |
| 運搬料 | — | — | 484,34 | 197,246 | 274,392 | 1,525,351 | 138,668 | 2.8 | |
| 漁撈事業原價合計 | | 6,969,106 | 6,878,728 | 6,837,210 | 4,947,247 | 49,747,383 | 4,522,488 | | |
| 販賣手數料 | — | 432,506 | 600,600 | 596,120 | 415,861 | 3,833,932 | 348,539 | 6.9 | |
| 支給利子 | — | 221,293 | 190,754 | 129,532 | 203,592 | 1,772,492 | 151,136 | 3.2 | |
| 總原價 { ① | — | 7,401,612 | 7,479,329 | 7,433,330 | 5,363,108 | 53,581,315 | 4,871,027 | | |
| ② | — | 7,622,905 | 7,670,082 | 7,562,862 | 5,566,702 | 55,353,807 | 5,032,163 | 100 | |
| 漁獲物數量(箱子) | | 1,329 | 3,282 | 3,612 | 1,963 | 25,541 | 2,322 | | |
| 單位當原價 { ① | — | @ 5,569 | @ 2,279 | @ 2,058 | @ 2,732 | @ 2,098 | @ 2,098 | | |
| ② | — | @ 5,736 | @ 2,337 | @ 2,094 | @ 2,836 | @ 2,167 | @ 2,167 | | |
| 漁獲物數量(kg) | — | 25,167 | 62,354 | 68,630 | 37,297 | 485,279 | 44,116 | | |
| 單位當原價 { ① | — | @ 294 | @ 120 | @ 108 | @ 144 | @ 110 | @ 110 | | |
| ② | — | @ 303 | @ 123 | @ 110 | @ 149 | @ 114 | @ 114 | | |
| 販賣金額 | — | 5,770,971 | 8,787,405 | 8,789,951 | 6,258,000 | 61,109,552 | 5,555,414 | | |
| 賣出原價率(%) | — | 132.1 | 87.3 | 86.0 | 89.0 | 90.6 | 90.6 | | |
| 利 益 率(%) | — | △32.1 | 12.7 | 14.0 | 11.0 | 9.4 | 9.4 | | |

다음은 生産原價率을 보면 生産原價率이란 賣出原價率로서 一會計期間에 發生한 總販賣金額에 對한 總原價合計의 比率이며, 總販賣額 100에 對하여 總原價合計額이 몇 %의 比重이 차지하고 있

二艘引 中型機船底引網漁業의 原價實態에 關한 研究

는가의 比率分析 ($\frac{\text{原價合計額}}{\text{販賣金額}} \times 100$)으로서¹¹⁾의 全體的인 活動能力을 表示한다. 이 比率은 標準比率이 없으며 低率일수록 收益에 對하여 費用이 زیاد는 것으로 良好하다는 表示가 되며, 高率일수록 利益이 زیاد는 것을 表示한다. 企業의 種類에 따라 이 比率은 大端히 相異하나 資本回轉率이 빠른 企業에서는 收支比率이 낮다 하여도 投下資本이 自由로히 運轉되기 때문에 적지않은 利益을 올릴수 있는 경우도 있다.

1975年度 本漁業의 生産原價率(賣出原價率)은 90.6%인데, 그 內容은 總販賣額 100에 對하여 總原價額이 90.6%라는 表示이므로 總收益의 9.4%가 純利益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生産原價率(賣出原價率)은 良好하게 表示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純利益이 적은 傾向이다.

이러한 點은, 本漁業의 費用支出이 過大하고 收益性이 낮은 傾向으로, 船舶의 거의가 中古船으로서 老朽船舶이 多數하고 機關自体가 舊式인 燒球機關을 使用한다는 點에서 燃料費 및 漁船修理費의 過大支出現象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VI. 結 言

지금까지 1975年度 二艘引 中型機船底引網漁業의 原價構成要素에 關한 實態를 分析 把握하고, 漁撈事業原價計算을 通하여 漁獲物 單位當原價를 算出한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本漁業의 總原價는 支給利子の 計算如否에 따라, 55,353,807원(내지 53,581,315원)으로 이 中 生産原價(漁撈事業原價)는 89.9%(내지 92.8%)인 49,747,383원이고, 總原價 100에 對하여 材料費는 48.8%~50.4%(27,027,662원), 勞務費는 18.8%~19.4%(10,381,013원), 經費는 22.3%~23%(12,338,708원)이며, 販賣手數料 및 支給利子は 10.1%(5,606,424원)의 構成比率로 支出된 實情이다. 그러므로 本漁業은 거의가 生産原價로서 投下되어 漁業生産에 生産費로서 支出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販賣費 및 一般管理費가 없는 것으로 看做되어, 거의가 90%以上 漁撈事業費로서 支出하여 營爲되고 있는 實情이기 때문이다.

本漁業에 있어서 原價要素의 構成比率은 總原價 100에 對하여 燃料費 23.6%, 船員配當金 14.3% 漁具費 14.1%, 漁船修理費 13%, 處理費 8.5%, 販賣手數料 6.9%, 給食費 4.5%, 支給利子 3.2% 運搬料 2.8%, 耗品費 2.6%, 諸稅公課金 2.5%, 船價償却費 2.4%, 業務費 1.6%의 順으로 年 支出費用 項目이 이루어진 셈이다. 그러므로 本漁業은 漁船自体가 中古船으로서 老朽船舶이 大部分이고 機關도 舊式인 燒波機關을 使用한다는 點에서 燃料費, 漁具費漁船修理費는 費用項目中 많은 支出額을 나타 낸 것이다.

또한 漁獲物單位原價(箱子當, kg當)는 支給利子를 計算치 않을 때에는 箱子當 2,098원이고 kg當 100원이었으며, 計算 하였을 때는 箱子當 2,167원이고 kg當 114원 이었다. 生産原價率(賣出原價率)은 90.6%이므로 利率은 9.4%로서, 곧 總收益의 9.4%가 純利益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生産原價率(賣出原價率)은 良好하게 表示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므로, 純利益이 적은 傾向이다.

11) 車均澤著; 經營分析例解, 1969, p. 114

수 산 경 영 본 집

이러한 점은 본漁業의 費用支出이 過大하고 收益性이 낮은 傾向으로 船舶의 거의가 20年 程度의 中古船으로서 老朽 船舶이 多數하고 機關自体가 舊式인 燒球機關을 使用한다는 점에서 燃料費 및 漁具費, 漁船修理費의 過大支出 現象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二艘引 中型機船底引網漁業은 이와같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으므로, 이를 解決하기 위한 對策으로 우선 新造漁船의 代替와 새로운 機關居置가 이루어 져야 되겠으며, 또한 操業漁場은 恒常 一定한 既存漁場에서 脫皮치 못하는 實情이므로 漁業收入의 增加現象이 보이지 않아 收益性이 向上되지 못하기 때문에 新漁場을 開拓하고 새로운 漁法의 導入으로 漁業技術의 向上을 期하므로써, 漁業收入(漁獲量)의 增加와 함께 原價節減을 試圖하여야 될 것이다.

또한 본漁業은 7月 下旬부터 9月 初旬까지는 夏季에 漁獲의 不振과 魚價가 낮고, 船舶定期檢査를 對備하여 이때 漁船 및 漁具의 修理와 再整備로서 漁業을 中斷하고 休業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므로 본漁業의 原價要素의 費用項目 金額과 委販金額이 8月에는 없었다.

그런데 본漁業에서 一般管理費가 거의 無視되어 나타나지 못한 점은 漁業自体의 經營規模가 작고 주로 沿近海漁場에서 操業하므로 船主들의 經營活動 節圍가 限定된 地域에서 營爲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船主들의 交通費 通信費 接待費 등의 管理費도 慣例上 無視되어 幅簿上에 記入하지 않으므로 實質적으로 支出되는 金額은 있다고 보겠으나, 正確한 資料調査가 行하여 지지 못했기 때문에 본資料整理에도 나타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考慮하여 불래 앞으로 船主들은 慣例上 無視되는 一般管理費 뿐만 아니라, 漁業經營에 支出되는 모든 費用項目을 빠짐없이 幅簿에 記入·整理할 수 있는 計數的 管理의 必要性을 認識하여 實踐할 수 있도록 講求되어야 할 것이다.

Summary

The results analyzed of the actual state of medium size two-boat trawler fishery based on the cost expended in 1975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calculation of interest, the total cost of this fishery comes to ₩ 55,353,807, and in this account, the production cost comes to ₩ 49,747,383 (89.9%) and the material cost comes to ₩ 27,027,662(48.8%), the labour cost comes to ₩ 10,381,013 (18.8%) the expenses, ₩ 12,338,708(22.3%) and commision and interest comes to ₩ 5,606,424 (10.1%). As above this fishery comes is 90% of production cost for the expense of production.

The ratio of cost element to the total cost 100 is as follow:

Fuel: 23.6%, allocation: 14.3%, fishing gear: 14.1%, boat repair: 13.0%, fish box: 8.5%, ice: 14.1%, commission: 6.9%, food cost: 4.5%, interest: 3.2%, transportation fee: 2.8%, consumption: 2.6%, tax: 2.5%, depreciation: 2.4%, administrative expense: 1.6%.

The unit cost of catches to each box, including the interest, comes to ₩ 2,107 and not calculating the interest it comes to ₩ 2,098.

The cost production to each kg comes to ₩ 114 including interest, without interest, it comes ₩110.

When the production cost comes to 90.6%, it comes to 9.4% of total revenue.

The reason which this fishery brings low income is that the boats are almost old and semi-diesel engine is used.

So, fuel expense and repaire expenses needs too much.

According to above this fishery needs to replace new boat and new engine.

And new are for this fishery needs to bring under cultivation in order to bring good income with the new method for this fishery.

Specially, this fishery brings low income from July to September because of its rest from labour.

And so, the expenses, item, an account of money, and the trust money the cost element are not showed in August.